



【성명서】

우)158-715 서울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 전화 02)3219-5611 전송 2643-6416 / www.pdnet.or.kr

iTV 법인은 ‘방송인’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라

- 경인방송 법인의 폐업철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방송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책임이 또 다시 무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재허가 거부 결정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며 폐업을 결의한지 3개월여 만에 iTV 법인이 지난 4월 1일 폐업을 철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라디오 iFM을 신규채용인력으로 운영하고, 향후 광고 수주와 사업 등의 본격적인 영업활동과 함께 중계차와 스튜디오를 포함한 유희 방송장비와 시설을 임대하는 등 수익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결국 iTV 이사회의 폐업은 명백한 위장폐업이었으며, 위장폐업과 고용해지, 폐업철회에 이어 선별고용을 통한 영업재개의 순으로 진행되는 iTV 법인의 음험한 시나리오임이 분명해졌다. 과행적인 운영으로 지역민들의 시·청취권을 빼앗아가고 방송을 위해, iTV 정상화를 위해 희생해 온 300여명의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더니, 이번 폐업철회는 그나마 방송인으로서 존재하리라고 기대했던 윤리와 책임의식마저도 이제는 포기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방송법상 사업권을 취소당한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사업권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신규 TV 사업자 공모에 나설 의향을 비치는가 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승소할 경우, 사업권을 다시 획득하겠다는 탈법적이고 이중적인 작태마저 보이고 있다.

방송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가와 사회의 공익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를 수행하는 방송인은 국민과 시·청취자에 대한 윤리의식과 책임감은 기본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iTV 법인의 작태는 이를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방송사를 이용하겠다는 불손하고도 위험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iTV 법인이 한때나마 방송인이었다는 기억을 지우려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전국의 방송인들 이름에 먹칠을 하는 비윤리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방송위원회에도 방송질서를 어지럽히는 iTV 법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요구하며, iTV에 대한 향후 대책을 시급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4. 4.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